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4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김영배·박홍배·이병진

김태선 • 한병도 • 김태년

이학영 · 문금주 · 전현희

문정복 · 송기헌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 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3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장애인 및 임산부"를 "장애인, 임산부 및 노인"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제3항에 따른 보청기 급여 등"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수급권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 또는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하는 자"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

기를 판매한 자 또는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한 자"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제12조제1항에 따라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및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u>장애인 및 임산부</u> 에 대한	제13조(<u>장애인, 임산부 및 노인</u> 에
특례) ①·② (생 략)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수급권자에게는 보청기
	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u>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
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	여,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u>방법・절차・범위・한도, 제3항</u>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에 따른 보청기 급여 등
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	
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	
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	
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	제13조제1항의
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제13조
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	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한 자
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 로 징수한다.

- ② (생략)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 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 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 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 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 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 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 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 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 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⑩ (생 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1. • 2.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	
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제13	
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	
는 자 또는 제13조제3항의 보	
<u>청기를 판매하는 자</u>	
<u>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u>	
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	
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	
는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	
<u> 매한 자</u>	
④ ~ ⑩ (생 략)	
제32조의3(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①	
1.•2. (현행과 같음)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3. ------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의료급여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3조제1항자한 자 및

②·③ (생 략)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 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및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한 자 및 제13조제3항의 보청기를 판매한 자